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0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주호영·김승수·김예지

이헌승 · 김종양 · 장동혁

김소희 · 김형동 · 박준태

신성범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 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 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 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직원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가 그 직을 사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u><</u> 삭 제>		
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所屬機			
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			
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